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[별표 6의4] <신설 2021. 4. 8.>

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(제93조의8 관련)

- 1.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
- 2. 질병·피로·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 한 사정을 해당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3. 운행 중에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4. 운전업무 중에 도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- 5. 여객이 다음의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.
 - 가. 다른 여객에게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,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
 - 나.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(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)을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
 - 다.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
- 6.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,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.
- 7.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해당 사고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8.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